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36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최민희・권향엽・김 현 김현정・모경종・박민규 박해철・이원택・장종태 정동영・채현일・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추가적인 유출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관한 정보”를 “관한 구체적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즉시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17의2. 제34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제34조제1항·제2항----------.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생 략)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5. (생 략) <신 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 ----------. 1.·2. (현행과 같음) 3. ----------관한 구체적 정보 4.·5.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즉시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

	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제34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4항----------
19. ~ 27. (생 략)	19.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